

## 《특허법실시세칙》 수정내용속보

Kangxin 지식재산권대리유한책임공사

2023년 12월 21일, 수정된 &lt;&lt;특허법실시세칙&gt;&gt;은 공포되어 2024년 1월 2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수정된 부분을 발췌하여 업무에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관련 내용	수정후 법조 번호	현행법규	수정후 《특허법실시세칙》	강신평는
1)권리구제 (인용가입, 우선권회복,등)	제 33 조제 2 항	특허법 제 24 조 제 2 항에서 말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또는 전국적인 학술단체가 조직하여 열리는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가리킨다	특허법제 24 조제 3 항에서 말한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또는 전국적인 학술단체가 조직하여 열리는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그리고 국무원 주관부문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가리킨다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예외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충하였고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제 6 조제 2 항	관련규정이 없음	재심 청구 기한이 지연된 경우 재심 청구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만기일로부터 2달이내 재심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6 조,제 128 조	관련규정이 없음	파리루트로 중국 입국 출원은 우선권 만료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우선권	우선권만기후 회복하는 정당한 이유는 실시세칙

			<p>회복 요청을 할 수 있다.</p> <p>PCT 루트로 중국 입국 출원은 중국 입국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우선권 회복 요청을 할 수 있다.</p>	<p>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따라 디자인의 우선권은 회복할 수 없다.</p>
제 37 조	관련규정이 없음	<p>발명 또는 실용신형특허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우선권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서에 우선권요구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우선권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전제조건은 원출원이 우선권을 청구한 것이다.</p> <p>디자인출원은 우선권을 추가할 수 없다</p>	
제 45 조	관련규정이 없음	<p>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특허출원이 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 명세서의 일부 내용은 부족하거나 잘못 제출되었지만 출원인이 제출일에 우선권을 요구했을 경우 제출일로부터 2개월내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내에 선행출원서류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보충제출할수 있다.보충한 서류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최초 제출 서류의 제출일을 출원일로 한다.</p>	<p>서류결함시의 보완조치는 파리루트의 출원 및 PCT 중국국가단계 진입출원(더 이상 보존을 안함)에 적용되는다.</p> <p>이 규정은 분할출원에 적용되지 않는다.</p>	

2)심사( 심사절차를 개선,품질 및 효율을 제고,등)	제 4 조 제 7 항	CNIPA 에서 발급하는 각종 문서의 수령일은 15 일로 추정함	<p>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보내는 각종 문서는 문서가 발송내가는 날로만 15 일로 당사자가 문서를 수령하는 날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는 날짜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한 경우 실제 수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전자형식으로 송달하는 각종문서는 당사자가 인정하는 전자시스템에 진입하는 날을 송달일로 한다.</p>	전자출원은 15 일의 우편시간이 없어지고 OA 답변기한을 주의해하 한다.
	제 18 조	관련규정이 없음	외국 출원인은 스스로 아래의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1) 우선권 서류 사본 제출 2) 납부 비용 3) CNIPA 에 규정된 기타 절차	대리를 강제하지 않는 상황
	제 49 조제 3 항	분양출원을 제출할 때는 원시 출원서유의 검증사본과 우선권 서류의 검증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삭제	분양출원절차를 감소화시킨다
	제 56 조 제 2 항	관련규정이 없음	출원인은 지연심사청구를 제기할수 있다.	초안에 "발명 또는 디자인출원은 연기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지만 최종판에서 “출원” 은 실용신형에도 적용된다고 수정하였다.
제 67 조 제 1 항	재심위원회는 재심시 거절결정의 정확성만을 심사함	국무원특허행정부문/협의조는 재심과정중 거절결정에서 지적하지 못한 명백한 결함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재심과정에서 직권에 따른 심사범위를 확대시킨다. 초안에서 무효선고심판에 대한 유사한 규정도 있었지만 최종판에서 삭제하였다.	
제 50 조 제 1 항	관련규정이 없음	(초보심사시)실용신형출원에 창조성을 분명히 가지지 않는 것을 심사한다. (초보심사시)디자인출원은 기존 디자인과 명백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현재는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명백한 신규성뿐만아니라 명백한 창조성 또는 근사성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제 30 조 제 31 조	관련 규정이 없음	부분디자인출원은 반드시 전체 제품의 부도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점선과 실선의 조합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보호청구범위의 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부분디자인출원을 제출시 반드시 요약에서 보호를 청구한 부분을	부분디자인 표현에 관한 규정	

			설명해야 하며 별도로 전체 제품 부도에서 점선과 실선의 조합으로 뚜렷하게 해당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제 35 조	관련 규정이 없음	발명 또는 실용신안출원은 디자인출원의 국내 우선권 기초로 할 수 있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은 외관디자인 출원의 국내 우선권 기초로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은 철회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오픈 라이선스	제85~88조	관련 규정이 없음	제85조:오픈라이선스 성명의 청구절차와 내용에 관한 규정 제86조:오픈라이선스를 금지하는 상황:전용 또는 전용실시권,중지 등 제87조:오픈 라이선스 후 등기를 해야 한다. 제88조:오픈 라이선스는 성실신용원칙을 지켜야 한다.	오픈 라이선스 실시 기간에 연차료면제가가능
4) 행정보호를 강화	제96조	관련 규정이 없음	특허법제70조에 규정하는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특허침해분쟁상황을 명확히 하였다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특허침해분쟁은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서 처리한다.
5) 특허보호기간 보상	제5장	관련 규정이 없음	1)심사지연으로 인한	

<p>( PTA 및 PTE )</p>	<p>(제77조~제84조)</p>		<p><b>보호기간보상(제77조~제79조,제84조):</b></p> <p>제77조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p> <p>제78조 보상 기한의 계산, 합리적인 심사 지연의 경우</p> <p>제79조 출원인이 불합리하게 지연된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특허청의 통지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지연 심사를 청구한 경우 등</p> <p><b>2) 약품특허보호기간 보상:</b></p> <p>제80조 신약 관련 발명특허는 규정에 부합하는 신약제품특허, 제조방법특허, 의약품도특허를 말한다.</p> <p>제 81 조 보상 조건</p> <p>제82조 보상기간의 계산: 보상기한은 당해 특허출원일부터 당해 신약이 중국에서 출시허가를 받은 날까지의</p>	<p>1) 요청된 심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은 출원인의 불합리한 지연시간과 합리적인 지연심사시간을 공제해야 한다.</p> <p>2) 약품특허보호기간 보상의 최장기한은 14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p> <p>3) 동시에 존재하며 계산이 중첩된다.</p>
----------------------	--------------------	--	---	---

			<p>간격일수에 따라 5년을 공제하고</p> <p>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p> <p>부합되는 기초에서 확정한다.</p> <p>제83조 보상기간 내 특허권의</p> <p>보호범위(1약1특허)</p> <p>3) 제84조: 보호기간 보상 청구에</p> <p>대한 심사 및 공시</p>	
6) 특허권평가 보고	제 62 조제 1 항	<p>특허권자와</p> <p>이해관계자만</p> <p>국가지적재산권국에</p> <p>실용신형이나</p> <p>디자인특허권</p> <p>평가보고서를</p> <p>제공하도록 청구할</p> <p>수 있다.</p>	<p>특허권자, 이해관계자,</p> <p>피소권리침해자는 국무원</p> <p>특허행정부서에 특허권평가보고를</p> <p>청구할 수 있다.출원인은 특허권 등록</p> <p>수속을 밟을 때 국무원</p> <p>특허행정부서에 특허권 평가 보고를</p> <p>청구할 수 있다.</p>	<p>초안중 “아무나” 청구할수</p> <p>있다고 규정하였지만</p> <p>최종판에서</p> <p>특허권리자,이해관계자,그리고</p> <p>피소침해자만으로</p> <p>한정하였다.</p>

	제 63 조제 1 항	관련 규정이 없음	<p>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 평가보고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출원인이 특허권 등기수속을 밟을 때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청구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등록 수속을 할 때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청구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다.</p>
7)국제디자인출원의 규정	제 12 장 (제 136 조~144 조)	관련 규정이 없음	<p>국제디자인출원에 관한 특수규정: &lt;&lt;헤이그협정 &gt;&gt; 과 관련된 국제디자인출원의 정의, 출원일과 효력발생일자의 확정 등이다.</p>	<p>&lt;&lt;헤이그협정&gt;&gt;1999 판본에 적용된다.국제디자인출원을 기반으로 제출하는 분할출원은 국내출원으로 간주한다.</p>